

우리나라 PL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주행 중 화재 발생한 승합차 보상 요구 건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99. 7. 6 피청구인이 제조한 승합차 서울O-러O-O-O-O를 구입한 후 2001. 8. 6 여동생 가족 등과 함께 여행을 마치고 귀경하던 중 서해안고속도로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체가 전소되자 피해보상을 요구함.

[조정결정이유]

가. 화재발생상황

본 위원회 담당자가 화재당시 이 건 차량을 운전했던 청구인의 제부 O-O-O(영업용 택시 운전)를 2001. 10. 25 피청구인의 O-O정비사업소에서 만나 화재발생 경위를 들어본 바 아래와 같음.

- ① 2001. 8. 6 21시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차선에서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하던 중 화성부근에서 무엇인가 내려 앓는 듯한 느낌과 차체하부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난 후 엔진출력이 떨어짐을 느끼고 바로 차량을 도로변에 세우는 순간 엔진이 저절로 꺼짐.
- ② 차량에서 내려 살펴보니 차체 하부에서 연기가 나오 있어 차량에 탑승해 있던 가족들을 하차시키고 차체 하부를 들여다보니 엔진하단부위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 수건으로 불길이 일어나는 곳에 대어 보았으나 잠시 불이 꺼지는 듯 싶더니 다시 불길이 일어났고, 차량에 있던 소형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어 지나가던 차량에서 소화기를 1개 빌려서 다시 시도하였으나 불길은 더욱 번져 소방차가 출동하였을 때는 차체가 거의 전소된 상태였음.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행 중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차량의 하자가 화재의 원인이라며 화재로 전소된 이 건 차량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화재차량을 조사한 바 차량결함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건 차량은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조정결정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1. 12. 8까지 금 4,900,000원을 지급한다.

나. 화재차량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2001. 8. 30 양 당사자와 함께 경기 화성 소재 O-O-O 공업사에 보

관중인 화재차량을 살펴본 바 차량 전체가 거의 전소되어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화재당시 출동한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발화원인을 엔진과열로 추정하고 있고, 엔진부위가 특히 많이 소손된 점으로 보아 엔진부위에서 발화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다. 기타 참고사항

- ① 이 건 차량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비이력은 없고,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음.
- ② 청구인은 화재발생 약 1개월 전에 정기검사를 위해 엔진오일 교환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2001. 7. 6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고, 화재 발생 이틀전인 2001. 8. 4 서해안고속도로 행담휴게소의 정비업소에서 타이어 공기압과 기어변속이 빽빽한 현상 등에 대해 점검을 받는 등 평상시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함.
- ③ 인터넷상의 중고차량시세를 조사한 바 이 건 차량의 중고시세는 7,000,000원 정도임.
- ④ 청구인은 화재로 차량 외에 카메라, 피서용 품, 의류 등이 소실되었고, 가로수가 4그루 탓서 450,000원을 도로공사에 보상해야 한다고 함.

라. 결론

이 건 차량은 차체가 거의 전소되어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나 차량 화재는 대개 외부적인 요인과 차량측 요인에 의한 화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 ① 이 건 차량의 경우, 먼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는 차량이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도로상에 있던 비닐이나 종이 등

이 배기장치에 접촉하여 발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화재당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불길이 처음 일어났던 부위를 목격한 지 00의 진술에 의하면 불길이 일어난 부위가 엔진하단 부위로써 배기장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으로 보아 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고,

- ② 다음 차량측 요인에 의한 화재는 차량이 거의 전소되어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주행도중 화재가 발생한 점, 화재 발생 바로 전에 차량하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바로 엔진출력이 떨어진 후 엔진이 꺼진 점, 엔진하단부위에서 불길이 일어난 점,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발화원인을 엔진과열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엔진과열 또는 연료라인의 문제로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건 차량의 화재가 방화나 도로상의 인화물질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나 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화재발생 1개월 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등 통상적인 차량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차량측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은 차량 화재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부분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보상금액에 있어서는 이 건 차량의 차체 및 일반 부품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점과 정확한 차량측 요인에 의한 화재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차량 중고시세의 30%를 감액한 금 4,900,000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조정결과 성립

판정보

옷장 경첩에 의한 손가락 상해 배상 요구

【사건 개요】

- 청구인의 7세 된 딸이 2001. 2. 10. 어린이용 옷장에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 옷을 꺼내다가 넘어지면서 무심코 짚은 옷장 경첩에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이 끼어 끝마디 성장점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음.
-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옷장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옷장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거절함.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옷장은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만큼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안전성이 결여된 경첩을 사용하여 청구인 딸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이 건 옷장 제조자 및 판매자는 연대하여 치료비 금 4,000,000원과 향후 발가락을 이용한 이식수술비 금 10,000,000원 및 위로금 금 6,000,000원을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제조자는 이 건 옷장에 사용한 경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첩으로써 가격이 고가임에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없고, 또한 이 건 사고는 아이의 부주의와 아이에 대한 부모의 보호가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함.

【결정사항】

피청구인 제조자 및 판매자는 연대하여 2001. 5. 31까지 청구인에게 금 10,18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이유】

이 건 옷장에 사용한 경첩은 성인도 상해를 입을 정도로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를 하고 있는 바, 볼펜 또는 연필 등도 쉽게 부러질 정도의 결함이 있는 부품임.

이 건 사고는 청구인 딸의 사용부주의도 일부 인정되나, 이 건 옷장은 어린이용이므로 어린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제작되어야 함에도, 기능성만을 강조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경첩을 사용하여 결국 어린이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발생한 데는 옷장을 제작·판매한 피청구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이 건 사고에 대해 배상하되, 청구인의 사용상 부주의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금 1,690,650원 및 향후 이식수술비 금 10,000,000원의 70%인 금 8,180,000원과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피해자 부모에 대한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조정결과 불성립

스트레칭 헬스기구 결함에 의한 피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1. 4. 14. 피청구인이 수입한 “AB-

Slide”라는 운동기구(이 건 운동기구의 특성은 무릎을 끊고 엎드려서 손으로 이 건 운동기구 손잡이를 앞으로 밀었다 다시 당기면서 운동하도록 되어 있음)를 청구 외 OO상사로부터 금3만원에 구입함. 2001. 4. 16 청구인은 이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려고 앞으로 미는 순간 스프링의 저항력이 약하여 몸의 균형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입 주위와 치아를 마루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 이로 인하여 치아 7개가 손상되어 청구인이 배상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자 과실도 있음을 주장하며 치료비 전액 배상 요구를 거절한 사건임.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넘어지면서 치아 7개가 손상되었으므로 현재까지 지출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전액 배상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함.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운동기구를 주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 과실도 있으므로 전액 보상은 곤란하다며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함.

[조정결정]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1. 11. 29까지 금 1,2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이유]

이 건 운동기구를 타사에서 제조한 동종의 운

동기구와 비교할 때 스프링의 저항력이 현저하게 약한 것으로 확인(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에서 동종의 타사 제품과 비교 시험결과)되었고, 이 건 사고 원인도 스프링의 저항력이 약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스프링의 결함이 이 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결함 있는 운동기구를 수입 판매한 피청구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도 이 건 운동기구를 시험적으로 먼저 사용해 본 남편이 이 건 운동기구의 스프링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의 없이 본인이 직접 스프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된 점이 인정되는 바, 이 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즉, 청구인은 이 건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친정 집에서 동종의 운동기구를 사용한 적이 있어, 이 건 운동기구의 특성을 알고 있었고, 스프링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이 건 운동기구를 주의없이 사용함으로써 이 건 사고가 확대된 측면도 없지 않음.

따라서 이 건 사고는 피청구인이 수입한 이 건 운동기구의 스프링 결함과 청구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확인한 손해액(3,966,260원) 중 약 30%인 1,2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배상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조정결과 불성립

자료 출처 : “제조물책임 사고 사례집”, 2003.

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에서